

편입학운영규정

제정 : 2020.12.01

개정 : 2021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09.01

개정 : 2024.03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18조, 「학칙 시행세칙」 제47조에 따라 편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2조(모집시기) 편입생 모집시기는 사전에 공고된 당해 연도 편입생 모집계획에 따르며, 일반편입의 경우 2학년 1학기, 학사편입의 경우 3학년 1학기에 한해 시행하며, 외국인 유학생 특별편입의 경우 4학년 1학기에 시행할 수 있다. 학사편입은 간호학과에 한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23.09.01., 2024.03.01.>

제3조(모집정원) 모집정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<개정 2021.12.01.>

1. 일반편입 : 각 모집단위 학년별 결원을 여석으로 산정하며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정원을 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2. 학사편입 : 3~4년제 학과 3학년 정원내 입학정원의 2/100 또는 간호학과 3학년 정원내 입학정원의 30/100 중 작은 인원으로 산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4.03.01.>
3. 외국인 유학생 특별편입 :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력을 검정한 후 정규학생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. <신설 2023.09.01.>

제4조(지원자격) 전문대학 이상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2학년 1학기 편입 : 33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1학년 수료자 <개정 2021.03.01.>
2. 3학년 1학기 편입 : 58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2학년 수료자 <개정 2021.03.01.>
3. 4학년 1학기 편입 : 98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3학년 수료이상자 <신설 2023.09.01.><개정 2024.03.01.>

제5조(편입학사정) 편입학 사정은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.

제6조(인정학점) ① 편입학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.

1. 2학년 편입 : 33학점 인정 <개정 2021.03.01.>
2. 3학년 편입 : 58학점 인정 <개정 2021.03.01.>
3. 4학년 편입 : 98학점 인정 <신설 2023.09.01.>

①의2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제1항의 기준 미만 시 취득학점까지만 인정한다. <개정 2021.03.01., 2021.12.01.>

② 편입학생은 「학칙」 제20조의2에 따른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휴학) 편입학생은 편입학 학기 일반휴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8조(전과) 편입학생은 「학칙」 제19조에 따른 전과신청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9조(졸업기준) 편입학생의 졸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2년제 75학점이상, 3년제 110학점이상, 4년제 130학점 이상 취득 <개정 2021.12.01.>
2. 본 대학교 편입한 학과의 편입학 이후 개설되는 필수과목의 이수
다만, 외국인 유학생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실습교과목 필수 대상에서 제외 <개정 2021.12.01., 2023.09.01.>

제10조(편입학취소) 편입학이 허가되어 등록을 마치고 수강 중이라 할지라도 학력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편입학을 취소한다. 다만,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. <개정 2021.12.01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모집정원) 2021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의 학사편입은 3~4년제 학과 3학년 정원내 입학정원의 2/100 또는 간호학과 3학년 정원내 입학정원의 30/100 중 작은 인원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